

	<h2 style="margin: 0;">인권센터 운영규정</h2>	표준번호	부속부설기관 9-1-23-1
		제정일자	2022. 2.18.
		개정일자	2023. 2.27.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성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 대학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피신고인 또는 피해자만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인권침해”란 차별행위, 성희롱·성폭력 그 밖의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의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 차이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성 차이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4.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5. “2차 피해”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하는 형태의 조사행위,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정이나 화해의 중용, 권리구제의 고의적 지연이나 방해, 그 밖에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 제2장 조직과 업무

**제4조(조직)** 본교에 사건의 피해 관련 상담 및 조사, 피해자 지원 및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과 연구, 교육 개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센터를 둔다.

**제5조(센터장)** ① 센터에는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직원)** 인권센터 내에 상담·조사 및 교육업무의 지원, 그 밖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교직원을 둔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구성원의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하여 본교 인권센터에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을 두고 대학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본교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제8조(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2.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피해(2차 피해 포함)에 관한 상담
3.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4.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과 관련한 사항
5.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6.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등 사건 처리 관련 규정 제·개정
7. 기타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업무

## 제3장 위원회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③ 인권센터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학생
3. 인권 보호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학생 위원은 최소 2명 이상으로 하되,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3이 되도록 한다.
- ⑤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및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권센터의 운영 및 평가
3. 예산과 결산
4. 이 규정 및 운영세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5. 그 밖의 인권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교수위원, 학생위원, 직원위원, 외부위원 각 1인 이상의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설치)** 인권침해 등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와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14조(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권센터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인권센터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직원
  2. 인권 보호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 징계 및 재발방지 요청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게 민·형사상의 법적구제 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4. 피신고인에게 관계법령 및 학칙·제규정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침해 사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심의위원회회의는 출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상담 또는 조사에 참여한 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위원의 질문에 답하거나 제시할 수 있다.
- ④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 ⑤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제17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②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상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위해서는 당사자와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명시된 서면신고서를 인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⑤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 신고자에게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9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신고가 없더라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여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⑥ 사건은 신고접수일 또는 직원조사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와 처리에 상당한 시일을 요하는 경우 센터장의 결정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률에 따른 조사권을 갖는 기관에서 당해 사건과 동일한 내용을 수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는 센터장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해당기관의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인권센터의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제8항에 따라 조사 및 처리 절차의 진행을 중단한 기간을 제7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⑨ 조사를 마치면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하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센터는 다음의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및 조회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 조사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센터는 전화, 전자메일, 우편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센터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동의 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내용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다.
- ⑤ 사건 조사 및 심의·의결 과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⑥ 피신고인이 제3항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나 사전 고지 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인 및 참고인의 진술 등 제반 사정을 토대로 사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21조(조정 및 중재)** ① 센터장은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조정 및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조정 및 중재가 성립된 경우 센터장은 각 당사자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 ③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한 경우 당사자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신고할 수 없다.
- ④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및 중재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장은 사건을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신고의 철회)** ① 신고인은 사건 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신고인이 신고를 철회하는 때에는 동일한 사안으로 다시 신고할 수 없다.

**제23조(신고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9조 제7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해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신고의 기각)**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기각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 침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센터장은 신고가 기각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구제조치 등)** ① 센터장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1. 인권침해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2. 성희롱·성폭력 재발방지교육 이수 및 상담
3. 사회봉사 프로그램 이수
4. 기타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에게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센터장은 사건 처리 과정 중 피해자, 신고인 또는 참고인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신변 보호를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위자나 그 소속 부서 등의 장에게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인권침해 등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도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 또는 권고를 받은 피신고인이나 관계부서의 장은 그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 및 심의위원회는 징계 요청과 별도로 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총장 및 학과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위원회는 상담과정이나 조사과정에서 사건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가해자가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거나, 유사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이의신청)** ①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가 재심을 결정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조사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조사 및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신고인은 조사 및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심의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당사자의 권리)** ①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와 조치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다.

② 피해자와 피신고인은 인권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이나 조력자를 동반할 수 있다.

③ 피신고인은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⑤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제29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운영위원, 상담원, 심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누설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운영위원, 상담원, 심의위원, 전문위원, 직원 등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 하였던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불이익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에 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부 칙(2022.2.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2.4.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23.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small>※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small>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고충 (신청 내용)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 기록				
요구사항	1. 인권침해 및 성희롱·성폭력의 중지( ) 2. 공간분리(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 첨부					